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투자설명서 변경 전·후 비교표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(신설)	2013.08.14 법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	운용현황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그림 설명 그림추가	(신설)	추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가. 일반위험 투자위험 추가 나. 특수위험 추가 다. 기타 투자위험 추가	(신설)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내용 추가,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추가 대량환매 위험, 예상배당 위험,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, 세금관련 위험 추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(신설)	클래스 C5 추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과세 변경안 적용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<u>2 천만원 이하</u> 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<u>2 천만원을 초과</u>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<p>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. 재무정보,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		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내용</p>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회사의 개요</p>	정보 업데이트	전기 정보	당기 정보로 업데이트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<p>임의해지</p>	<p>임의해지 관련내용 추가 및 통지절차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또한, <u>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</p>	<p>회계감사 적용면제 변경 안 적용</p>	<p>[회계감사]</p> <p>1)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 억원 이하인 경우</p> <p>2)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[회계감사]</p> <p>1)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<u>300 억원 이하인</u> 경우</p> <p>2)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<u>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</u>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			우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공시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(www.lkam.co.kr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(www.lkam.co.kr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.)</u>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</p>	<p>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에</u>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</p>